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 (內) (事) (件)

## 意匠權利範圍確認

<大法院 第1部 判決>(1982. 7. 27)

裁判長: 大法院判事 전 상 석

關與法官: // 이 일 규, 이 성 털, 이 희 창

1. 審判請求人(上告人): 우 용 호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배 호 용

3. 原審決: 特許廳 1981. 9. 29字, 抗告審判(당) 第18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 5. 理 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은 本作(가)호 圖面の 필립 및 녹음테이프포장케이스는 被審判請求人이 實施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意匠의 登錄 第22467號의 意匠權利範圍속에 속한다는 審判을 求하는 本件 請求의 實利益이 없는 不適法한 것이라는 判斷을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審判請求人도 (가)호 意匠을 被審判請求人이 實施하고 있지 않은 點을 다루지 않는 바이다. 原審의 위와 같은 措置는 正當하다고 할 것이다. 그 理由는 (가)호의 意匠은 本件 登錄意匠과의 關係에 있어 審判請求人과 被審判請求人 사이에 權利 내지 法律關係에 무슨 紛爭이나 法的 利害關係의 상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權利範圍確認의 利益이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론은 被審判請求人이 使用하고 있는 (나)호 도면 意匠은 (가)호 圖面の 것과 類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것이라는 原審決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등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점에 관한 실시는 불필요한 대목으로 실사 그점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호 도면의 의장이 (나)호 圖面の 것에 同一할 程度로 類似하다고 한들 (가)호 圖面の 意匠의 登錄 第22467號의 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는 審判이 確定되어 그 기관력은 개호도면의 意匠에만 미치는 것

이지 (나)호 圖面の 意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實施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圖面の 意匠에 對한 本件 請求는 아무 實利益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여 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 考

#### 抗告審判

1980年 抗告審判(당) 第18號

抗告審判請求人: 배 호 용

被抗告審判請求人: 우 용 호

主 文: 原審決을 파기한다.

本件 審判請求는 이를 却下한다.

審判 및 審判費用은 被抗告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 審 判

1979年 審判 第207號

審判請求人: 우 용 호

被審判請求人: 배 호 용

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22467號 意匠의 權利範圍確認審判事件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 文: (가)호 圖面の 필립 및 녹음테이프포장케이스는 登錄 第22467號 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